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2

전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노258 사기
피 고 인	A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선문(기소), 권오승(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4고단2177, 2015고단67(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5. 8.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2015고단67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에 연구개발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은 이 부분 연구과제 책임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C 등 다른 교수들이지 피고인이 아니며, 피고인은 단지 위 책임연구원들에게 피고인의 제자들인 학생들을 소개시켜 주고, 인건비가 지급되면 위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의 아래 인건비를 통합관리하였을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2015고단67호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로, 공소사실 제18행 이하 '하여 함께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C 교수로 하여금'을 '하여 함께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고, 그 정을 모르는 C 교수로 하여금'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위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C 등 다른 교수들이 책임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C 등 다른 교수들인 사실은 인정되나, C 등 다른 교수들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일부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그 제자들인 학생들과 위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던 사실, C 등 다른 교수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맡긴 연구과제가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질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 연수과제 수행 과정에서 어느 학생이 참여하는지 또는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수행할 연구과제에 참여할 연구원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피고인이 알려준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였으며, 인건비도 위와 같이 연구원으로 등록된 사람들 앞으로 지급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이 부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실제로 참여하지 아니한 연구원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받아서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연구개발사업에 실제로 참여한 연구원의 경우라도 인건비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C 등 다른 교수들에게 숨겼고, C 등 다른 교수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사를 알지 못한 채 연구개발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는 C 등 다른 교수들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부분 인건비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죄의 간정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맞추어 검사는 당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사기



의 고의가 없는 C 등 다른 교수들을 이용하여 인건비를 편취한 것으로 변경하였는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4면 제2행 '하여 함께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C 교수로 하여금' 부분을 '하여 함께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고, 그 정을 모르는 C 교수로 하여금'으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4고단2177호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2015고단67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학교 교수의 지위



에 있는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를 신청하거나, 인건비를 참여 연구원 본인에게 전부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일부만 지급할 의사였는데도 인건비를 전부 지급할 것처럼 산학협력단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약 8년 동안 합계 2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통합관리하게 된 것은 연구원들 간의 인건비 불균형의 문제 등을 시정하고, 연구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인건비를 사용할 목적 때문이었던 것인 아닌 점, 비록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령한 인건비 중 많은 금액을 연구실 운영비나 연구원들의 활동비, 등록금 등으로 지출하는 등으로 연구과제 수행 및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3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D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당수 학생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하여 헌신하여 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도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9-22

재판장 판사 박헌행 _____

 판사 정성화 _____

 판사 송한도 _____